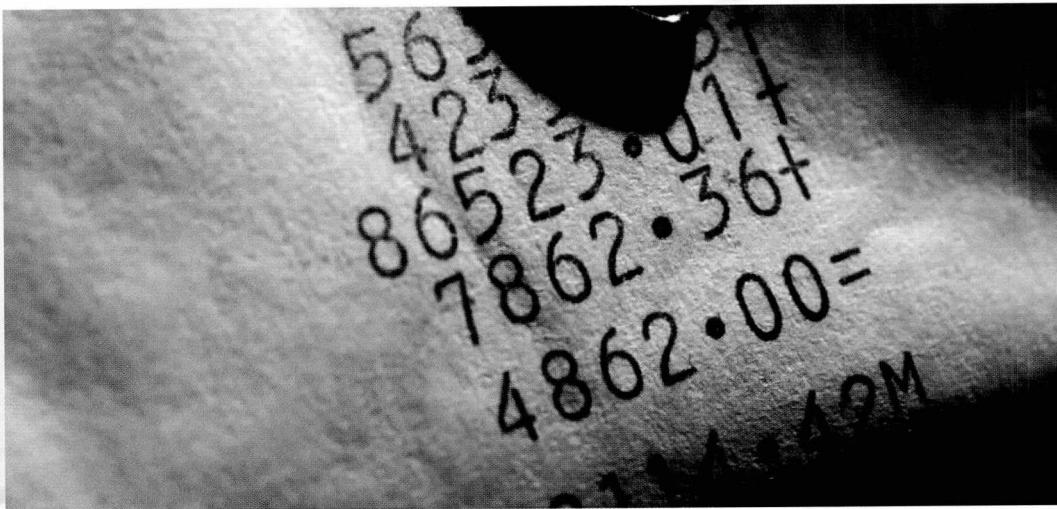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

## 세금 부과 기간 얼마나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척 기간'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제척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글 | 이호 회인경영회계법인 회계사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해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다. 그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6년 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였다. 정갑부 씨는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양도소득세의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세법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 한다. 대부분 국민들은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최장 15년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 지나야 제척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나 허위 신고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이 지나야 제척 기간이 만료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금도 제척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제척 기간이 만료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며, 부당이득세의 경우는 기준 가격을 초과해 거래 한 날,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이 제척 기간이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경우 ▲ 계약 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을 따른다.

그리고 이의신청·심사 청구·심판 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사안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세법상 과세 표준액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고치는 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세의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조세 조약)의 규정에 의해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 합의에 따라 경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국세 부과권이 소멸되어 정부는 더 이상 결정·경정 결정·재경정 결정·부과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척 기간 내에 부과하지 않은 조세에 관해서는 그 후속 단계인 징수권이 새로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성립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 나온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